

## 공개청구정보 및 결정내역

안녕하세요.

법무부 난민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접수번호 : 11669871

□ 청구정보 : 2023년 난민현황 등

안녕하세요.

2023년도 난민현황과 외국인보호소 현황을 공개 요청합니다.

청구목록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1) 난민 현황
- (2) 출입국항의 난민 현황
- (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난민 현황
- (3) 외국인보호소 현황

□ 결정 내역 : 공개(부존재 포함)

1. 난민현황

1. 2023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불허, 철회, 취소자 현황

(단위 : 건)

연도\구분	1차 신청	이의 신청	심사 결정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불인정 (인체 제외)	취소	1차 철회	이의신청 철회
2023년	18,838	5,248	5,950	101	129	5,720	0	2,568	502

2. 2023년 난민인정자 인정단계별(1차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재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구분	계	1차	이의신청	소송
2023년	101	76	18	7

※ 가족결합 사유 난민인정 건은 48건이나 재신청 중 난민인정 현황은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 2023년 인도적체류자 인정단계별 (1차심사, 이의신청, 소송, 가족결합, 재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구분	계	1차	이의신청	소송
2023년	129	101	28	0

※ 가족결합 및 재신청 중 인도적 체류허가 현황은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2023.12.31. 기준 심사 중 현황 및 심사대기 현황

○ 2023. 12. 31. 기준 심사대기 건수는 1차 심사 20,246건, 이의신청 심의 6,491건입니다.

5. 최근 3년(2021~2023년)간 난민인정취소 / 인도적체류지위 취소자 현황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최근 3년(2021~2023년)간 난민인정취소 / 인도적체류지위 취소 사유 유형별 현황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2023. 12. 31. 기준 가족재결합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누적)

○ 난민신청 건수는 총 4,258건, 난민인정자는 총 539명입니다.

8. 2023년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인정 현황

(단위 : 건)

계	에티오피아	미얀마	이집트	콩고 민주공화국	파키스탄	기타
48	10	8	5	4	3	18

9. 2023년도 가족재결합 난민의 단계별 (1차심사, 이의신청, 재정착, 행정소송) 인정 현황

(단위 : 건)

계	1차	2차	소송
48	43	4	1

10. 2023. 12. 31. 기준 국적별 난민심사(신청/심사중/종료) 현황

- 난민인정신청 100건 미만인 국가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워, 해당 국가명만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국적	구분	1차				이의신청			
		신청	완료	철회	대기	신청	완료	철회	대기
<b>총 계</b>		<b>103,760</b>	<b>58,483</b>	<b>25,031</b>	<b>20,246</b>	<b>43,412</b>	<b>34,943</b>	<b>1,978</b>	<b>6,491</b>
러 시 아 ( 연 방 )		13,711	4548	3614	5,549	2793	2184	225	384
카 자 흐 스 탄		11,731	5335	4072	2,324	3401	2688	181	532
중 국		9,506	4922	3316	1,268	3394	2770	351	273
파 키 스 탄		7,438	5489	1389	560	4767	4189	175	403
인 도		6,392	3888	907	1,597	3570	2395	116	1,059
이 집 트		5,673	4661	757	255	4094	3467	110	517
말 레 이 시 아		4,928	1427	2427	1,074	1000	705	111	184
방 글 라 데 시		3,860	2807	748	305	2375	1507	146	722
나 이 지 리 아		3,247	2673	326	248	2409	2224	52	133
네 팔		2,544	1595	620	329	1193	997	50	146
튀 르 키 예		2,477	1423	401	653	992	505	31	456
몽 골		2,014	796	339	879	517	387	18	112
스 리 랑 카		1,836	1020	608	208	685	546	23	116
모 로 코		1,807	1212	353	242	963	756	58	149
필 리 핀		1,778	954	736	88	727	616	33	78
우 즈 베 키 스 탄		1,654	703	488	463	351	311	11	29
시 리 아		1,611	1348	130	133	278	258	4	16
타 이		1,441	724	602	115	406	381	18	7
가 나		1,401	1059	170	172	945	867	20	58

라 이 베 리 아	1,375	1052	204	119	954	857	29	68
미 양 마	1,349	909	97	343	410	268	6	136
예 멘 공 화 국	1,240	1022	108	110	317	288	8	21
카 메 룬	1,199	901	186	112	793	711	31	51
키 르 기 즈	1,165	477	253	435	307	265	9	33
베 트 남	1,112	608	480	24	265	258	5	2
에 티 오 피 아	1,018	655	69	294	526	370	9	147
우 간 다	991	727	161	103	630	599	9	22
남아프리카공화국	937	598	181	158	502	455	20	27
튀 니 지	701	256	74	371	216	144	10	62
알 제 리	628	433	113	82	374	323	8	43
세 네 갈	478	416	38	24	385	363	6	16
기 니	464	379	38	47	344	306	5	33
이 라 크	370	215	62	93	155	84	13	58
케 냐	339	189	46	104	157	137	5	15
말 리	336	256	30	50	224	162	4	58
아 프 가 니 스 탄	326	232	43	51	172	119	9	44
코 트 디 부 아 르	311	255	33	23	212	201	4	7
타 지 키 스 탄	310	59	55	196	33	24	0	9
이 란	297	231	45	21	162	120	10	32
콩 고 민 주 공 화 국	293	222	28	43	168	156	2	10
수 단	281	214	23	44	172	153	3	16
감 비 아	254	190	27	37	172	155	2	15
캄 보 디 아	230	106	113	11	35	33	0	2
탄 자 니 아	229	79	31	119	67	49	0	18
리 비 아	227	81	26	120	57	26	2	29
우 크 라 이 나	203	89	85	29	42	32	3	7
르 완 다	202	53	15	134	43	29	1	13
아 이 티	195	115	17	63	46	20	0	26
인 도 네 시 아	193	94	65	34	52	42	2	8
부 룬 디	152	73	5	74	39	30	1	8
요 르 단	124	96	16	12	73	57	3	13
앙 골 라	122	92	17	13	74	67	2	5
투 르 크 메 니 스 탄	117	1	2	114	0	0	0	0
기 타*	943	524	242	177	374	287	24	63

\* 가봉,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비사우, 남수단공화국, 네덜란드, 니제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무국적, 미국, 바레인,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소말리아, 스웨덴, 스위스,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리트레아, 아스와티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만,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 쿠웨이트, 타이완, 토고,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홍콩

### 11. 2023년도 월별 난민신청/ 인정현황

(단위 : 건)

구분 \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18,838	1,327	1,304	1,426	1,348	1,420	1,523	1,569	1,724	1,722	1,890	1,974	1,611
인정	101	5	7	13	1	4	13	15	3	10	12	3	15

### 12. 2023년도 난민 재신청 현황

○ 총 1,801건입니다.

### 13. 2023년도 신청사유별 난민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 사유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	정치	가족결합	기타
계	719	2,665	329	1,205	4,580	887	8,453

※ 신청 사유별 현황은 난민신청자가 신청할 당시 난민인정신청서 상 선택한 박해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복수 사유가 있을 시 대표적 사유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여 난민면접 후 신청 사유가 정정되는 경우도 있음

### 14. 최근 3년(2021~2023) 연도별 신청사유별 난민 인정 현황

(단위 : 건)

연도 \ 사유	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	정치	가족결합
2021	72	6	2	0	5	18	41
2022	175	4	10	0	7	89	65
2023	101	13	16	0	6	18	48

### 15. 2023년도 국적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 국적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기타
계	5,750	2,094	1,282	1,205	1,189	7,318

### 16. 2023년도 국적별 난민인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 국적	미얀마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기타
계	18	13	12	10	6	42

17. 2023. 12. 31. 기준 난민인정자 국적별 현황 (누적)

(단위 : 건)

계	국적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파키스탄	기타
1,439		450	161	123	115	105	485

18.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건)

거점	사무소	연도	2023년
서울	소계		8,411
	서울		3,850
	남부		3
	수원		418
	양주		502
	대전		475
	청주		597
	춘천		256
	세종로		65
	고양		67
	평택		1,234
	천안		104
	서산		96
	당진		270
	동해		385
	속초		2
	화성보호소		77
	청주보호소		10
인천	소계		5,429
	인천		3,930
	안산		1,499
부산	소계		2,063
	부산		391
	울산		598
	창원		299
	김해		725
	통영		7
	사천		3
	거제		40
광주	소계		1,830
	광주		1,053
	전주		211
	목포		358
	군산		129
	광양		29
	여수		50

대구	소계	578
	대구	577
	구미	1
제주		436
인천공항		79
난민정책과		12
총계		18,838

19.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인정 현황(1차 심사 인정 건 기준)

(단위 : 건)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기타*
계	76	34	21	7	0	2	0

\* 재정착 난민

20. 2023년도 사무소별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현황(1차 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건 기준)

(단위 : 건)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계	141	90	35	7	0	9

21. 2023년도 비자유형별 난민 신청 현황

(단위 : 건)

비자	B계열	C계열	E계열	G계열	기타
계	18,838	10,363	5,498	542	1,260

22. 2023년도 난민인정자 신청당시 체류자격별 분류 현황

(단위 : 건)

비자	B계열	C계열	E계열	G계열	기타
계	101	11	28	2	3

23. 2023년도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중 난민신청자 수(난민신청 당시에 미등록체류중)

○ 2023년 난민신청자 총 18,838건 중 540건입니다.

24. 2022. 12. 31. 기준 난민인정자 중 신청당시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수 현황

○ 2023년 난민인정자 총 101건 중 13건입니다.

25. 최근 3년(2021~2023년)간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분류된 난민신청자 통계

○ 해당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6. 2023년도 국적별 인도적 체류허가 현황

(단위 : 건)

계 \ 국적	아이티	이집트	미얀마	예멘공화국	시리아	기타
129	67	12	10	8	7	25

27. 2023. 12. 31. 기준 국적별 인도적 체류허가 현황(누적)

(단위 : 건)

계 \ 국적	시리아	예멘공화국	아이티	미얀마	이집트	기타
2,613	1,263	794	77	55	39	385

28. 2023년도 난민신청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

- (성별) 남성 13,606건, 여성 5,232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연령	1,293	415	140	189	111	438	6,412	6,550	3,171	990	27

29. 2023년도 난민인정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

- (성별) 남성 54건, 여성 47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연령	46	31	3	5	2	5	22	16	9	6	0

30. 2023년도 인도적체류지위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

- (성별) 남성 84건, 여성 45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연령	23	20	0	2	0	1	55	35	10	1	1



31. 2023.12.31. 기준 난민신청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누적)

- (성별) 남성 78,461건, 여성 25,299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연령	5,593	2,297	654	695	348	1,599	38,298	37,019	16,860	4,039	106

32. 2023.12.31. 기준 난민인정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누적)

- (성별) 남성 817건, 여성 622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연령	546	316	72	83	40	35	365	350	121	44	2

33. 2023.12.31. 기준 인도적체류지위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누적)

- (성별) 남성 1,990건, 여성 623건입니다.
- (연령별)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연령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
	소계	0~4	5~7	8~12	13~15	16~18					
건수	611	316	60	68	43	124	1,124	639	119	34	8

34. 2023.12.31. 기준 난민불인정결정 받은 미성년 난민신청자 현황(누적)

- 1차 난민불인정결정 건수는 총 3,215건입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건수 중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 포함

35. 2023.12.31. 기준 위 난민불인정결정 받은 미성년 난민 중 이의신청 건수 현황

- 총 3,215건 중 2,080건입니다.

36. 최근 3년(2021~2023) 난민인정자 중 F-2 비자 발급 현황(발급 여부 심사중/ 미발급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7. 2023년도 1차 심사 종료된 난민신청자(최초 신청) 대상 평균 심사결정 기간

○ 2023년도 기준 1차 난민신청 심사 평균 심사결정 기간은 12.1개월입니다.

38. 2023년도 1차 심사 종료된 난민재신청자 대상 평균 심사결정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9. 2023년도 1차 심사 종료된 난민신청자 대상 최장기 심사결정 기간

○ 2023년도 기준 최장기 심사결정 기간은 60개월입니다.

40. 2023. 12. 31. 기준 3번 이상 난민심사 기간연장 결정한 난민신청자 현황

○ 해당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1. 2023년도 6개월 이내 난민심사 결정자 수 및 국적별 현황

○ 총 2,436건이며, 국적별로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2.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사무소	계	본부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수원	양주	울산	안산
난민심사담당자	90	23	37	1	6	11	4	2	2	1	1	1	1
난민심사관*	4	-	2	-	1	1	-	-	-	-	-	-	-

\* 「난민법」 제8조 제4항, 동 시행령 제6조 : 5급 이상 출입국관리공무원

43. 2023년도 난민관련 담당공무원 급수별 인원

(단위 : 명)

계 \ 직급	4급	5급	6급	전문임기제 다급 (6급 상당)	7급
90	2	8	24	17	39

44. 2023년도 난민심사담당관 급수별 인원(※ 통역을 제외한 1차 심사 담당공무원)

(단위 : 명)

계 \ 직급	4급	5급	6급	전문임기제 다급 (6급 상당)	7급
63	-	4	17	8	34

45. 2023년도 1차 심사 시 심사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심사 난민인원

○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난민인정 심사 담당자는 38명\*으로, 1인당 평균 25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63명 중 심사 담당 38, 접수·소송 검직 25명

46.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인원수

- 난민법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47. 2023년도 난민조사관 1인당 월별 조사건수 현황

- 2023년 이의신청 난민조사관 월별 조사 건수는 약 20건입니다.

48. 2023년도 신규충원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통역인 수(언어별)

- 2023년도 신규로 충원된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은 없으며, 난민전문통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도 위촉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현황(단위: 명) >

러시아어 33, 중국어 32, 영어 24, 베트남어 18, 미얀마어 5, 태국어 4, 몽골어 4, 튀르키예어 3, 인도네시아어 3, 프랑스어 2, 카자흐어 2, 우즈베크어 2, 아랍어 2, 싱할라어 2, 벵골어 2, 포르투갈어 1, 편자브어 1, 타갈로그어 1, 이란어 1, 우르두어 1, 스페인어 1, 스와힐리어 1, 다리어 1, 네팔어 1, 광둥어 1 (25개 언어, 148명)

49.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난민조사관 교육진행내역(진행일자, 내용, 참가인원)

-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교육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일자	교육내용	참가인원
3.13.~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개관</li> <li>•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 정황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li> </ul>	32명
4.24.~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인식 개선 교육</li> <li>• 아동면접 시 유의사항</li> <li>• 전문가 초청 강연 - 러시아 국가정황</li> </ul>	14명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및 특이사례 분석</li> <li>•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li> <li>•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 모의 면접</li> </ul>	10명
8.16.~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개관</li> <li>•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UNHCR 등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 정황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수단 국가정황</li> </ul>	19명
9.18~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개관</li> <li>• 전문가 초청 강연 - 아프리카 국가정황, 유럽 난민 사례, 의사소통과 난민통역</li> </ul>	40명
12.7.~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항 난민회부 절차 및 심사 유의사항</li> <li>•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li> <li>•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소송의 이해, 난민 공공외교</li> </ul>	32명

○ 난민조사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일자	교육내용	참가인원
2.10.~2.16.	· 신규 난민조사관 교육 - 난민 이의신청 심사 기준 등	1명
3.20.~3.22.	· 신규 난민조사관 교육 - 난민 이의신청 심사 기준 등	1명
7.17.~7.19.	· 신규 난민조사관 교육 - 난민 이의신청 심사 기준 등	1명
7.24.~7.28.	· UNHCR 난민조사관 신규 교육	4명
11.17.~11.21.	· 신규 난민조사관 교육 - 난민 이의신청 심사 기준 등	1명
12.4.~12.15.	· UNHCR 난민조사관 전문 교육	9명

50. 2023년도 난민신청/면접심사 시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된 건수(변호사 조력을 받은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51. 2023년도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52. 2023년도 난민 이의신청시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된 건수(변호사 조력을 받은 건수)

-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53.~55. 2023년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소집시기, 심사 인원 및 심사 위원 수)

(단위 : 건, 명)

구분 \ 횟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소집시기	2. 10.	4. 7.	6. 2.	7. 21.	9. 8.	11. 17.
심의건수	602	525	530	308	530	530
참석 위원	10	14	13	13	13	14

56.~57. 2023년도 난민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소집시기, 심사인원)

- 2023년도 난민 분과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단위 : 건)

구분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심의 기간	1.18.~ 1.27.	2.23.~ 3.6.	3.13.~ 3.23.	4.19.~ 4.29.	5.4.~ 5.19.	6.26.~ 7.11.	8.3.~ 8.22.	8.17.~ 8.25.	9.20.~ 10.6.	10.23. ~11.3.	12.7.~ 12.20.
심의 건수	290	279	246	274	258	306	261	269	349	327	297

58. 2023년도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난민신청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건수  
 -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추가 면접 및 전화조사 등 사실조사는 174건입니다.

59. 2023년도 언어별 난민전문통역인 현황

○ '23. 12. 31. 기준 총 34개 언어 308명이 위촉 중이며, 언어별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계	국적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기타
308		66	53	51	25	11	102

60.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진행 내역 (진행일, 내용, 참가인원)

진행일자	교육내용	참가인원
6. 27.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 난민통역 실기 • 난민통역 현장 평가와 상황 • 21세기 난민의 세계 동향 및 국내 정책	117명
7. 15. ~ 9. 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교육] • 난민통역 기초이론 • 통역인 행동강령과 윤리 • 통역 실기 등	278명
9. 23.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 대한민국 난민 업무에서 통역의 중요성 • 난민통역 실기 • 난민통역을 위한 언어 향상법	83명
11. 2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교육] • 난민통역 평가 및 현장 사례 • 난민전문통역인의 역할 • 난민통역 경험담 공유	95명

61. 2023년도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 해당 내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62. 2023년도 사무소별 영상녹화 기기보유대수 현황

사무소 수량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계	21	8	4	1	3	3	2

63. 2023년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면접건수와 실시건수)

구분 \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면접건수	4,643	938	526	186	465	149	274
녹화건수	4,414	937	515	178	446	138	268

64. 2023년도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 신청 및 열람 허가 건수

구분 \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신청건수	2	3	0	1	1	0	1
허가건수	2	3	0	1	1	0	1

65. 2023년도 사무소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포함) 난민 의료비 신청 건수

(단위 : 건)

구분 \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그 외
계	0	3	0	0	0	0	1

66. 2023년도 사무소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포함) 난민 의료비 집행 건수

(단위 : 건)

구분 \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그 외
계	0	1	0	0	0	0	1

67. 2023년도 사무소별(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포함), 목적별 건강검진 건수 및 집행금액

- 목적별 건강검진 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2023년도 결산 전으로 현시점에서 건강검진 집행 내역은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2023년도 기초건강검진 예산 신청·지원 건수

- 신청건수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지원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 사무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지원센터
계	0	0	0	0	0	0	60

69. 2023년도 국적별 생계비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사무소	에티오피아	러시아	중국	몽골	그 외
계	171	54	29	29	285

70. 2023년도 연령별 생계비 신청자 현황('24. 1. 1. 기준)

(단위 : 명)

연령	0~4	5~14	15~18	19~64	65세 이상
계	50	30	13	474	1
568					

71. 2023년도 성별 생계비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성별	남	여
계	352	216
568		

72. 2023년도 국적별 생계비 지원결정자 현황

(단위 : 명)

국적	에티오피아	러시아	인도	몽골	그 외
계	152	31	22	19	155
379					

73. 2023년도 연령별 생계비 지원결정자 현황('24. 1. 1. 기준 나이)

(단위 : 명)

연령	0~4	5~14	15~18	19~64
계	23	28	12	316
379				

74. 2023년도 성별 생계비 지원결정자 현황

(단위 : 명)

성별	남	여
계	240	139
379		

75. 2023년도 기간별 생계비 지원내역 (예: 1개월-5명 등)

○ 평균 지급 기간은 3.3개월입니다.

(단위 : 명)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 외
계	28	40	51	124	20	2
265						

※ '22년도 선정되어 '23년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84명 포함

76. 2023년도 생계비 지원 결정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

○ 생계비를 신청한 다음달에 심사가 진행되며,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77. 2023년도 재정착난민 실무협의체 개최 현황(회의일자, 참석자 현황)

-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난민처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조정·협의를 위하여 재정착난민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 재정착난민 실무협의체 대신 '23. 7. 에는 난민처우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8. 최근 3년(2021~2023년)간 연도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건수

(단위 : 건)

2021	2022	2023
10,504	5,711	7,912

79. 최근 3년(2021~2023년)간 연도별 인도적체류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건수

(단위 : 건)

2021	2022	2023
1,109	946	1,072

80. 2023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변경, 부여)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수수료 면제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1. 2023년도 난민신청자(G-1-5) 평균 체류연장허가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2. 2023년도 난민신청자(G-1-5) 체류기한 부여기준

-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심사 진행상황, 체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회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3. 2023년도 난민신청자(G-1-5) 체류기한 6개월 미만 부여 건수 및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4. 2023년도 난민인정자(F-2) 평균 체류연장허가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5. 2023년도 난민인정자(F-2) 체류기한 부여기준

-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 사유 소멸 여부, 국내 체류실태 또는 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회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86. 2023년도 난민인정자(F-2) 체류기한 6개월 미만 부여 건수 및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7. 2023년도 인도적체류자(G-1-6) 평균 체류연장허가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8. 2023년도 인도적체류자(G-1-6) 체류기한 부여기준  
○ 인도적체류자의 인도적 체류 결정 당시의 사유 소멸 여부, 국내 체류 실태 또는 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회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89. 2023년도 인도적체류자(G-1-6) 체류기한 6개월 미만 부여 건수 및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0. 2023년도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변경, 부여) 불허 건수 및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1. 2023년도 난민신청자(G-1-5) 체류기간 연장 불허 건수 및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2. 2023년도 난민신청자 출국명령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3. 2023년도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4. 2023년도 난민신청자 출국기한 유예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5. 2023년도 난민재신청자 출국기한 유예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6. 2023년도 타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 시 난민 신청한 경우의 출국기한 유예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7. 2023년도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 건수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내 발급 건수  
○ 신청인의 관할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3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266건입니다.

## II.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

### 1.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 월별 현황

(단위 : 건)

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8	21	16	23	13	25	34	37	53	29	32	33	22

### 2.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성별 현황

(단위 : 건)

계	성별	남	여
338		268	70

### 3.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중 미성년자 현황

- 미성년(19세 미만) 신청자 수는 4명입니다.

### 4. 2023년도 출입국항별 난민신청, 회부 및 불회부 현황

(단위 : 건)

		계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신청		338	274	1	6	57
결정소계		351	285	1	6	59
결정	회부	87	79	0	0	8
	불회부	256	199	1	5	51
철회		8	7	0	1	0

### 5. 2023년도 출입국항 회부심사 담당 공무원 수 및 자격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는 회부심사 담당자로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출입국항의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 6. 2023년도 출입국항 언어별 통역 현황

(단위 : 건)

계 언어	러시아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암하라어	프랑스어	힌디어	기타
350	114	43	39	18	33	13	20	70

7. 2023년도 불회부결정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건수
  - 총 3건입니다.
8. 2023년도 불회부결정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7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4호입니다.
9.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출국대기실 입실 현황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외부진료 현황
  - 총 14건입니다.
11. 2023년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Ⅲ.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 현황

#### 1.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월별 입·퇴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소	77	-	6	-	1	-	7	17	10	1	6	8	21
퇴소	74	8	-	-	-	1	29	-	1	4	8	22	1

#### 2.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국적별 입·퇴소 현황

##### ○ 국적별 입소 현황

(단위 : 건)

계	국적	에티오피아	러시아	중국	브룬디	미얀마	기타
77		11	10	10	8	7	31

##### ○ 국적별 퇴소 현황

(단위 : 건)

계	국적	미얀마	중국	러시아	브룬디	무국적	기타
74		32	14	8	5	4	11

#### 3.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연령\*별 입·퇴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입소	77	14	26	29	5	3
퇴소	74	19	16	29	8	2

\* 답변 작성일(24.1.11.) 기준 만 나이로 집계함

#### 4.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성별 입·퇴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남자	여자
입소	77	44	33
퇴소	74	39	35

#### 5.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가족단위 입소자 수 및 가족 수 현황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6.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적지위별(난민신청자, 재정착난민 등) 현황  
(단위 : 건)

계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77	10	3	64

7. 2023년도 및 2023.12.31 기준 누적 입소자 평균 거주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8.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난민 현황 및 (거주 기간) 연장 사유

○ 숫자가 적어, 공개될 경우 정보 자체 또는 타정보와 결합하여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 중 난민인정자 현황

○ 연번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 불허 결정 현황 및 사유

○ 신청자 80명 중 77명 입소하였고, 3명은 자진철회 등 사유로 미입소하였습니다.

11. 2023년도 국적, 연령, 성별 불허자 현황

○ 숫자가 적어, 공개될 경우 정보 자체 또는 타정보와 결합하여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난민법」 제17조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중도 퇴소 인원 및 사유

○ 27명이 중도 자진 퇴소하였습니다.

13.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중도 자원퇴소자 중 재정착 난민 포함 여부 및 포함되었다면 그 사유

○ 재정착난민 중 중도 자원퇴소자 없습니다.

14. 2023년도 중도 자원퇴소자 평균 거주 기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외출 신청 및 허가/불허가 건수

○ 2023년 총 외출신청 건은 882건으로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16.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담당공무원 급수별 인원

(단위 : 명, 현원 기준)

계 \ 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2	1	1	5	1	2	2

17.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실시한 출입국공무원 교육 및 연수횟수 및 내용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2023년도 입소자 대상 교육 커리큘럼

대상	교육 커리큘럼
난민신청자(성인)	• 한국어 주5회 3시간, 한국사회문화 주2~3회 2~3시간
재정착난민(성인)	• 한국어 주5회 3시간, 한국사회문화 주2회 2시간 • 푸드아트테라피 주1회 2시간, 전통악기 주1회 2시간 • 정보화교육 주1회 3시간, 운전면허 주1회 2시간
학생	•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경인교대 협업) - 동계(1.30~2.10.)실시 • 학령기 학생은 일반학교 편입학 후 공립다문화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에 위탁교육 실시

19. 2023년도 입소자 교육 이수 현황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규칙 및 벌점부과에 관한 규칙

위반 행위별 벌점 규정	점수	
· 형법 등 법률 위반	30	
· 벌금형 및 경범죄 행위	15	
· 지원센터 안전 준수사항 위반	15	
· 질서 유지 협조 사항 위반	20	
· 무단 연속 외박	2일 이상	15
	1일	10
· 인원점검 거부 또는 불참 시	10	
· 위반 행위 제지 불응	10	
· 귀가 시간 위반	3	
	사전연락 시	1
· 타 이용자 배려사항 위반	5	

※ 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이용자는 강제 퇴소 조치를 당할 수 있음

21.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외출 관련 규칙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외출 및 외박)**

- ① 이용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일주일을 초과하는 외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⑥ 평일 총 외출·외박일수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센터 생활의 일부로 직원 등이 동행하는 활동은 제1항~제6항의 외출 및 외박 규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2. 2023년도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과 재정착난민주택임차비용을 지원받은 재정착난민 인원 수, 가구 수, 기수와 입국시기

- 2023년도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과 재정착난민주택임차비용을 지원받은 인원은 총 70명(24가구)이며, 67명은 2022년, 3명은 2023년 입국하였습니다.

23. 2023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재정착 기수별 입소자 현황

- 재정착난민 제9기 3인 및 제10기 7인이 입소하였습니다.

#### IV. 외국인보호소 난민 현황

1. 2023년도 출입국사범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결정시 난민신청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고려여부 및 관련 기준 내지 지침
  - 우리 부는 난민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난민신청자의 체류 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난민업무 지침 82~87면 참조).
  - 난민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참조), 그 중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환하지 않음으로써(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난민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 2023년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명령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실)에 수용된 외국인 중 난민신청한 현황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2023년도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건수
  - 총 2건입니다.
6. 2023년도 난민인정자에 대한 보호명령 건수
  - 총 2건입니다.
- 7~9. 2023년도 외국인 일반 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기각 건수건수

(단위 : 건)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인용 (특별체류허가)*	기각(각하)
31,932	110	46	64

\*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명백하여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체류허가한 경우



10~11. 2023년도 보호일시해제 신청, 인용, 기각 건수

(단위 : 건)

보호일시해제	신청	인용*	기각	심사중**
건수	771	198	567	6

\* 2023년도 신청건에 대한 인용 건수

\*\* 2023. 12. 22. 이후 접수하여 현재 심사중인 건수

12~13. 2023년도 보호일시해제 평균 기간, 보호일시해제 사유별 인용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2023년도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산정 기준

○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 훈령제1303호) 제8조 제1호부터 제10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p><b>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보증금의 예치) ①</b>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피보호자를 일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위반 사유, 정도(경중), 횡수, 동기 및 결과</li> <li>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유무</li> <li>3. 신원보증인 유무</li> <li>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li> <li>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li> <li>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li> <li>7.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li> <li>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li> <li>9. 피보호자가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li> <li>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li> </ol>
--

15~17. 2023년도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평균 액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건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인용/기각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2023년도 외국인 일반 보호명령 건수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 총 36,352건입니다.

19. 2023년도 평균 보호기간

○ 2023년도 평균 보호기간은 11.7일입니다.

20. 2023년도 최장기/최단기 보호기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 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023년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2항 및 3항의 연장심사시 보호해제 결정 건수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총 34건입니다.

22~23. 2023년도 장기보호외국인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장기보호외국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해제/보호일시해제 결정 건수

구분	개최일자	보호일시해제 결정
9차	2023. 7. 27.	3명

24~25. 2023년도 보호명령 이의신청 건수, 보호명령 이의신청 인용/기각 건수  
 (단위 : 건)

보호명령 이의신청 건수	인용	기각/각하
20	0	20

26.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평균 운동시간

○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반보호동은 주 5회, 1시간씩 운동 가능, 개방형 및 준개방형 보호동의 경우 운동장 개방시간 내 항상 운동 가능합니다.

※ 여자보호외국인 대상 개방형: 평일 및 주말, 하절기(07:30~19:00), 동절기(08:00~18:00)

남자보호외국인 대상 준개방형: 평일, 09:00~17:00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주 5회, 60분씩,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장기보호외국인은 주 3회, 20분씩, 단기보호외국인은 주 2회, 20분씩 운동 가능합니다.

27.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운동 장소 및 방법

○ 보호시설 내 마련된 야외운동장에서 운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28.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1인당 평균 인터넷 사용 허가 시간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및 준개방형 보호동의 경우 개방시간내 인터넷PC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 여자보호외국인 대상 개방형: 평일 및 주말, 08:00~21:30, 남자보호외국인 대상 준개방형: 평일, 09:00~17:00

29.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컴퓨터 개수

구분	화성	청주	여수
인터넷PC	46	5	12

30.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핸드폰 사용 허가에 관한 지침
- 일반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 공간에서 휴대폰 및 인터넷PC 사용을 적극 허가하도록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안을 '22. 12월 시행 하였습니다.
  - ※ 화성보호소 개방형 보호동: 별도 마련된 공간인 휴대폰 존에서 일과시간 내 휴대폰 사용 가능
- 31~32.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핸드폰 사용 허가 건수, 보호외국인 면회 건수 (화성, 청주, 여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3. 2022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통역인 수 (언어별, 상주, 비상주 인력 각각의 인원)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외국어 특채직원 및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 화성보호소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체결, 7개 언어 통역 지원
34.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통역인 이용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5.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 보호실 면회에 관한 규칙 (핸드폰 제출 등)
-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일반면회), 제34조(특별면회)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4조(면회신청인 신분확인), 제52조(출입자 휴대금지 품목 및 보관)

####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일반면회)** ①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회의 신청·접수 및 면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형제자매·직계친족이 동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⑤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⑧ 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⑨ 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색
2. 면회신청인과 면회신청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3. 면회 시의 준수사항 불이행 시 주의 또는 중지 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였을 때
3. 면회신청인이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안팎에서의 시위나 유형력(有形力)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질서유지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⑪ 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2. 면회인이 흥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하였을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단식·자살·자해·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教唆)하였을 때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4조(면회신청인 신분확인)** ① 면회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면회담당”이라 한다)이 면회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 및 서식 제36호의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 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보호외국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37호의 금품 전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면회신청자 및 보호외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거짓의 신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출입자 휴대금지 품목 및 보관)** 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사전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회적 유인물 등 타인에게 배포, 선동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녹음이 가능한 물건
3.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한 물건
4. 무기, 탄약
5. 인화물질
6.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물건
7.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6~37.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일반/특별 면회 건수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38.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보호실 특별면회 신청 자격과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 특별면회 자격

-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한다)
-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 제출시 필요서류

- 외교관(영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변호사 신분증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9.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보호실 면회 대동 통역인 신청 자격과 신청시 제출 필요서류

○ 통역인 신청 자격은 없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40.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1일 식비 평균 금액

○ 외국인보호소 1일 평균 식비 5,616원입니다.

41~42.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외출허가 및 외부 병원진료 건수

(단위 : 건)

구분	화성	청주	여수
외출허가	298	42	133
외부병원진료	199	34	104

43.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외출허가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4. 2023년도 보호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현황 (보호일시해제 중인 자 포함) 및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5. 2023년도 보호외국인 중 난민인정을 받은 후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 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현황(보호일시해제 중인 자 포함) 및 해당 보호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사유,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
- 해당 자료는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6.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독방 격리보호 건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보호장비 사용 건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무기사용 건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여수) 각 청원, 고충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

(단위 : 건)

구분	화성	청주	여수
국가인권위진정	15	6	5
청원	0	0	1

- 고충상담은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